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마약류관리법)



[시행 2024. 5. 7.] [법률 제20214호, 2024. 2. 6.,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05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제40조) 044-202-3871

제1장 총칙 <개정 2011. 6. 7.>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6.> [전문개정 2011. 6.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4. 18.>

- 1.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 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 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 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 유하는 물질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 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 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7. "원료물질취급자"란 원료물질의 제조・수출입・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8. "군수용마약류"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해군・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 9.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 8. 16.>
 - ③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야 한다.<개정 2023. 8. 16.>

[전문개정 2011. 6. 7.]

[제3조의2에서 이동 <2011. 6. 7.>]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지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야 한다.

[전문개정 2023. 8. 16.]

[시행일: 2024. 8. 9.] 제2조의2

- 제2조의3(마약퇴치의 날) ①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 **제2조의3(마약류관리기본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 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4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마약류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마약류관리에 관한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 3. 마약류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필요한 사항
 - 4. 그 밖에 마약류관리의 체계적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4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8. 16.]

[시행일: 2024. 8. 17.] 제2조의3

- **제2조의4(마약류대책협의회)** ①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약류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 2.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국제협력·수사·단속·치료·재활·교육·홍보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마약류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 ③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차장 또는 상임위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차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부차관・외교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방송통신위원회상 임위원・국가정보원차장・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대검찰청차장검사・관세청차장・경찰청차장・해양경찰청차 장 및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3. 마약류와 관련하여 학계·언론계·기관·단체에 종사하는 등 마약류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⑤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⑦ 협의회와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 제2조의4(마약류대책협의회) ①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약 류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 2.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국제협력·수사·단속·치료·재활·교육·홍보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마약류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 · 조정이 필요한 사항
 - ③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차장 또는 상임위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차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부차관・외교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국가정보원차장・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대검찰청차장검사・관세청차장・경찰청차장・해양경찰청차장 및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3. 마약류와 관련하여 학계·언론계·기관·단체에 종사하는 등 마약류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⑤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⑦ 협의회와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8. 16.]

[시행일: 2024. 8. 9.] 제2조의4

- 제2조의5(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사건보도로 인한 마약류 사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2,]

[시행일: 2024. 7. 3.] 제2조의5

제2조의6(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대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2.]

[시행일: 2024. 8. 9.] 제2조의6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7.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8. 삭제 <2016. 2. 3.>
- 9. 삭제 < 2016. 2. 3.>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 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 위
 -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 라. 제5조의2제5항

제3조의2

[종전 제3조의2는 제2조의2로 이동 <2011. 6. 7.>]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2.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8. 12. 11.>
-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 지 소지하는 경우
-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
-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2. 3.,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6. 7.]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라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3. 13.>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 또는 임시마약류의 수입・수출・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8. 3. 13.>
- 1. 국내의 수요량 및 보유량을 고려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입 또는 수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동일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의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 는 경우
-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8. 3. 13.]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 1.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 2.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임시마약류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8. 3. 13.>
- 1. 「약사법」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 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 2. 「약사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 임시마약류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8. 3. 13.>
- 1. 임시마약류의 지정 사유
- 2. 임시마약류의 명칭
- 3. 1군 임시마약류 또는 2군 임시마약류의 구분
- 4. 임시마약류 지정의 예고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 예고에 관한 사항
- 5.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 전에 예고한 임시마약류(이하 "예고임시마약류"라 한다)에 대한 효력은 임시마약류로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로 하며, 예고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마약류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는 그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3항에 따라 예고하여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 3. 18, 2018. 3. 13.>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 ⑤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3. 13.>
- 1.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2.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3.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 4.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신설 2018. 3. 13.>
- 1. 공무상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 2. 그 밖에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 6. 7.]

- **제5조의3(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관한 사항
 - 2. 마약류의 안전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
 - 3.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식품의약품 안전처 차장이 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마약류의 안전관리,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4. 그 밖에 마약류 안전관리 또는 관련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2장 허가 등 <개정 2011. 6. 7.>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①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6. 2. 3., 2022. 6. 10.>

- 1. 마약류수출입업자: 「약사법」에 따른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 2.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 3. 마약류도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
- 5. 대마재배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자
- ② 마약류관리자가 되려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22. 6. 10.>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14. 3. 18., 2018. 12. 11.>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마약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마약류 중독자
- 3. 「약사법」・「의료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밖에 마약류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지정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8.

- 제6조의2(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 ②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료물질의 수출입업자 또는 제조업자로 허가받을 수 없다.<개정 2018. 12. 11.>
 - ③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허가 제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18. 12. 11.>

[본조신설 2011. 6. 7.]

[제목개정 2018. 12. 11.]

- 제7조(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① 제6조제1항・제2항이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 명부(名簿)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지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2022. 6. 10.>
 - ② 제6조제1항·제2항이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가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6. 7.]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讓渡)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마약류의 취급 또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 제조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다시 시작(이하 "폐업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각 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3. 2018. 12. 11.>
- 1.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의료법」제40조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등을 신고 한 경우
- 2. 마약류소매업자가「약사법」제22조에 따라 약국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 ③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 및 소지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의 품명, 수량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8. 12. 11.>
- 1. 사망한 경우: 상속인(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후견인(後見人)
- 3.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淸算人)
- 4. 학술연구를 마친 경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④ 허가관청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1.>
- ⑤ 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2018. 12. 11.>
- ⑥ 허가관청은 제5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12. 11.>

제3장 마약류의 관리 <개정 2011. 6. 7.>

- 제9조(수수 등의 제한)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2018. 12. 11.>
 -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5. 5. 18., 2016. 2. 3., 2023. 8. 8.>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가. 품목허가가 취소되어 소지·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 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 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승인자(제5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또 는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 2.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 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3.「약사법」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제5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마약류취 급승인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 ③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다른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류(제제는 제외한다)를 양도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10조 삭제 <2015. 5. 18.>

-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승인번호및 허가・취급승인일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
 -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 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통계법」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마약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질병명과 소유자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 2.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라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의 업소명칭, 성명 및 면허번호
 - ③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제1항과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조제 · 투약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
 - 1.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 (마약류소매업자에 한정한다)
 - 2.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한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 3.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하여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환자 또는 처방의사의 성명이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보고를 하여야한다.<개정 2019. 12. 3.>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대상・절차・시기 등 및 제5항에 따른 변경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15. 5. 18.]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13조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정보(이하 "마약류 통합정보"라 한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하 "통합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 1. 마약류 통합정보의 수집・조사・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2.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3. 제11조에 따른 마약류 취급 보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4. 마약류 통합정보의 표준화 및 활용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5. 제11조의3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제11조의3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마약류의 통합정보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 등을 대상으로 보고받은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마약류 오남용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주민등록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기록, 진료기록, 의약품공급기록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개정 2019. 12. 3.>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보고된 정보나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와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1항제6호에 따른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은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9. 12. 3.>
- ⑦ 그 밖에 통합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2. 3.> [본조신설 2015. 5. 18.]
- 제11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취급·관리를 위하여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및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 6. 10.>
 -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1조에 따른 마약류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 2.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범죄수사에 관련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약내역(일자, 약품정보, 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전자적 방법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이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한다.
-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요구 또는 요청한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 제11조의5(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가공하여 활 용할 수 있다.
 - 1.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도록 하는 경우
 - 2.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마약류 오남용 사례 및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하여 과다 처방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자료제공의 내용 및 대상 등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3. 마약류 오남용 관련 연구, 조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마약류 오남용 관련 통계 자료 등을 제공 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가공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2. 3.]
- 제11조의6(취급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통합정보센터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종사하였던 사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용역·연구·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수행하였던 사람, 제11조의4 또는 제11조의5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 받은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마약류 통합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1.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2.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 12. 3.]
-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말하며, 마약 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 1. 재해로 인한 상실(喪失)
 - 2. 분실 또는 도난
 - 3. 변질 부패 또는 파손
 -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2013. 3. 23., 2016. 2. 3.>

-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 2.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 3.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 [전문개정 2011. 6. 7.]
-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①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한다)가 제8조 및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취급자 · 상속인 · 후견인 · 청산인 및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 재산의 관리인 · 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5. 5. 18.>
 - ② 제1항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 등을 승인한 허가관청은 승인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5. 5. 18.>
 -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6. 7.]
- 제14조(광고) ① 제3조제12호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제조업자 ·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제18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학 · 약학 · 수의학에 관한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 또는 수단에 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광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2020. 3. 31.>
 - ② 제1항에 따른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0. 3. 31.>
 - 1. 의학 약학 수의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 또는 잡지
 - 2. 제품설명회. 이 경우 설명 내용에는 부작용 등 사용 시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광고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6. 12. 2., 2020. 3. 31.> [전문개정 2011. 6. 7.]
- 제15조(마약류의 저장)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조의2제6항 각 호에 따라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전문개정 2011. 6. 7.]
- 제16조(봉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수출 또는 양도할 때에는 그 용기나 포장을 봉함(封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함은 그 봉함을 뜯지 아니하고서는 용기나 포장을 개봉할 수 없고, 개봉한 후에는 쉽게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 1. 마약류수출입업자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 2. 마약류제조업자
- 3. 마약류원료사용자
-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5. 마약류취급승인자
- ② 마약류취급자 ·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제1항에 따라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수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6. 2. 3.>
- 1. 마약류취급자가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소유자 등 마약류취급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 2. 제13조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제17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①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 ②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포장 및 첨부 문서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붉은 색으로 표시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를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3.>

[전문개정 2011. 6. 7.]

제4장 마약류취급자 <개정 2011. 6. 7.>

- **제18조(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①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지 못한다.
 - ②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3. 18.>
 - 1.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을 것.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 2.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을 것.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심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④ 제2항의 경우 제44조에 따라 품목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품목의 허가를 하지 못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품목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6. 7.]

제19조 삭제 <2015. 5. 18.>

제20조(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수입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6. 7.]

- **제21조(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 ① 마약류제조업자가 아니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 ②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6. 7.]

- **제22조(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 ① 마약류제조업자는 제조한 마약을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마약류제조업자가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3조 삭제 <2015. 5. 18.>

- **제24조(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 ① 마약류원료사용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 ② 마약류원료사용자가 한외마약을 제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5조 삭제 <2015. 5. 18.>

- 제26조(마약류의 도매) ① 마약류도매업자는 그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의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 연구자 외의 자에게 마약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 ② 마약류도매업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 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 외의 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7조 삭제 <2015. 5. 18.>

- **제28조(마약류의 소매)** ①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마약 또는 향정 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마약류소매업자는 그 조제한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③ 마약류소매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6. 1.>
 - ④ 마약류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처방전을 발행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거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3, 8, 8,>
 - 1. 제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 2.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사항을 거 짓으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처방전의 경우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9조 삭제 <2015. 5. 18.>

-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3.>
 -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 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

[전문개정 2011. 6. 7.]

-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3,>
 -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 무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3. 6. 13.>
 - ③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 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 2023. 6. 13.>

[전문개정 2011. 6. 7.]

[시행일: 2024. 6. 14.] 제30조

제31조 삭제 <2015. 5. 18.>

- 제32조(처방전의 기재)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3.>
 - 1.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2.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진료부에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동물에게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2019. 12. 3.>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11. 6. 7.]

제33조(마약류관리자) ①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제1항의 마약류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 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임 마약류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해당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1.>
- 1. 제8조제5항에 따라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 2.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제34조(마약 등의 관리)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할 때에는 그 마약류관리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구입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면 이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6, 7,]
- **제35조(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①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학술연구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 ②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학술연구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대마초 재배 현황을 포함한다)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5. 18.>
 - ③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학술연구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5. 18.>
 - ④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장부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 제36조(대마재배자의 보고) ① 대마재배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마초의 재배 면적과 생산 현황 및 수량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 ② 대마재배자는 그가 재배한 대마초 중 그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각 (燒却)・매몰하거나 그 밖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2. 3.>

[전문개정 2011. 6. 7.]

제37조(허가 등의 제한) 허가관청은 제6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할때에 마약류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을 한정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지역 또는 특정 품목에 관한 사항은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 제38조(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①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도·감독과 품질관리, 그 밖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마약류취급자는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 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장 마약류 중독자 등 <개정 2019. 12. 3.>

-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 2.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 3.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 6. 7.]

-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 2. 3.>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신설 2023. 8. 1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정,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16.>

[전문개정 2011. 6. 7.]

-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4. 2. 6.>
 - 1. 마약류 사용 여부 감정을 위한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 및 장비
 - 2.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등에 필요한 보조적 검사장비
 -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 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③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
 -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6.>

-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하거나 재지정한 치료보호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3.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을 개발·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2. 6.>
- ⑦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신설 2024. 2. 6.>
-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4. 2. 6.>
- ⑨ 제8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 보호심사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 회를 둔다.<신설 2024. 2. 6.>
- ⑩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및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24. 2. 6.>
- 1.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나, 판별검사의 기준에 관한 사항
 -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 라.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 · 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 2.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 나.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 · 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신설 2024. 2. 6.>
- ①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정·재지정,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4. 2. 6.>

[전문개정 2011. 6. 7.]

[시행일: 2025. 2. 7.] 제40조제2항, 제40조제3항, 제40조제4항, 제40조제5항, 제40조제6항, 제40조제7항, 제40조제8항, 제40조제10항, 제40조제11항, 제40조제12항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사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하 "수강명령"이라 한다)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한다.
 - ④ 법원이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 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 刑)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 ⑥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 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 ⑦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 1.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 상담
 - 2.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 3. 그 밖에 마약류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⑧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제 51조의6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8. 16.>
 - ⑨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 제40조의3(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40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마약류 중독여부, 병력(病歷),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6장 감독과 단속 <개정 2011. 6. 7.>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해당 업소나 공장・창고, 대마초 재배지, 약국, 조제 장소, 그 밖에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8. 3. 13, 2020. 3. 31.>
 - 1. 해당 업소 등의 구조・설비・업무현황, 기록한 서류와 의약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
 - 2. 관계인에 대한 질문
 - 3. 마약류·임시마약류·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과 물건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거. 이 경우 시험용으로 필요한 최소 분량으로 한정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센터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현장 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5. 5. 18.>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개정 2015. 5. 18.>

- 제42조(폐기 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보고된 마약류나 제13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마약류 및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제조·판매·저장 또는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불량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폐기 또는 압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 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대마재배자가 제36조제2항에 따른 폐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이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저장된 원료물질이 발견된 경우

[전문개정 2011. 6. 7.]

- 제43조(업무 보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전문개정 2011. 6. 7.]
-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①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은 이 법에 따른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고 그 약품의 성분・처방 등을 변경함으로써 그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4. 3. 18., 2015. 5. 18., 2018. 12. 11., 2019. 12. 3., 2021. 8. 17., 2024. 2. 6.>

- 1.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 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나. 제5조제3항의 조치를 위반한 때
 - 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라.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마.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 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양도한 경우
 - 사. 삭제 < 2015. 5. 18.>
 - 아. 삭제 < 2015. 5. 18.>
 - 자. 제11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차. 제12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한 경우
 - 카. 제14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광고한 경우
 - 타.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저장한 경우
 - 파. 제1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봉함하지 아니하거나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수수한 경우
 - 하.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거. 삭제 < 2015. 5. 18.>
 - 너. 제20조 제22조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 더. 제32조를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 한 경우 및 처방전을 작성・비치・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러.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 머.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버. 대마재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계속하여 대마초를 재배하지 아니한 경우
 - 서. 제38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 어. 제4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 질문 수거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저. 제50조를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처.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료물질의 수출입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한 경우나 승인 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출입한 경우
 - 커.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료물질의 제조, 수출입, 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터. 제51조제2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 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 작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경우
 - 퍼. 제5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허.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출입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2.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 가. 제6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 나. 제18조제2항제1호 · 제21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다. 제1호가목 파목 어목 또는 제9조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라. 제1호자목・차목・러목・허목 또는 제9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마. 마약의 유효성분 함량이나 제제할 때 발생하는 마약의 손실률(損失率) 등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 바. 마약류취급자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약사 등의 자격을 상실하거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의약품 도매상 등의 허가가 취소 등이 된 경우
- 사.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 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2호사목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1.>
- ④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한다.<신설 2024. 2. 6.>

- 제44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①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실질적 운영 자를 포함한다)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3조제11호를 위반(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한 경 우에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 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시행일: 2024. 8. 7.] 제44조의2

제45조(청문) 허가관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 제46조(과징금처분) ①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하여 제44조제 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는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11.>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2. 3.>
- 1. 납세자의 인적사항
-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 ④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폐업등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16, 2, 3, 2020, 3, 24.>
- ⑤ 허가관청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6. 2. 3, 2022. 6. 10.>
- 1.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 3. 「자동차관리법」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 도지사

제47조(부정 마약류의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재배,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조제 또는 연구에 사용하는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및 임시마약류에 대하여는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8. 3. 13.>

[전문개정 2011. 6. 7.] [제목개정 2014. 3. 18.]

- 제48조(마약류 감시원) ①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마약류와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 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및 시 · 군 · 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 마약류감시원을 둔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 ② 마약류 감시원의 자격,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49조 삭제 <2023. 8. 16.>

- 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①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는 제외한다)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하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의 방법・횟수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6. 7.]

제51조(원료물질의 관리) ①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제조,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이하 이 조에서 "거래"라 한다)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3. 6. 4.>
- 1. 「약사법」에 따라 제조・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있는 제조・거래의 경우
-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제조·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있는 제조·거래의 경우
- 3. 원료물질 복합제를 제조·거래하는 경우
- 4. 통상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합법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로 거래하는 경우
- ③ 원료물질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1. 원료물질의 구매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의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원료물질의 도난 또는 소재불명,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원료물질취급자나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그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⑤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제조·거래 기록의 작성·보존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 ⑦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국제협력에 필요한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조·거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제51조(원료물질의 관리) ①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제조,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이하 이 조에서 "거래"라 한다)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3. 6. 4., 2023. 8. 16.>
 - 1. 「약사법」에 따라 제조・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있는 제조・거래의 경우
 -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제조·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있는 제조·거래의 경우
 - 3. 원료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하로 함유하는 원료물질 복합제를 제조·거래하는 경우
 - 4. 통상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합법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로 거래하는 경우
 - ③ 원료물질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1. 원료물질의 구매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의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원료물질의 도난 또는 소재불명,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 ④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원료물질취급자나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그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⑤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제조·거래 기록의 작성·보존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 ⑦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국제협력에 필요한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조·거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시행일: 2024. 8. 17.] 제51조제2항제3호

제6장의2 마약류 중독 예방 등 <신설 2023. 8. 16.>

-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및 홍보
 -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상담・홍보 등 사업(이하 "사회 재활사업" 이라 한다)
 - 3. 사회재활사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 4. 그 밖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업무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있고,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할 수있다.
 - 1.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로서 이 법에 관한 정보
 - 3.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관련 정보로서 건강에 관한 정보
 - 4. 제40조의2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이행실적
 - 5. 이 법을 위반하여「형사소송법」제247조에 따라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의 교육 이수실적
 - ③ 제2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인력의 양성·활용과 사회재활사업,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16.]

- 제51조의3(마약퇴치의 날) ①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③ 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시행일: 2024. 8. 17.] 제51조의3

- 제51조의4(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사용・중독・확산 및 예방・치료・재활・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 제51조의5(마약류 명예지도원) ① 마약류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고 홍보・계몽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 ②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자격,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 **제51조의6(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①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 1.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계몽 및 교육 사업
 -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 3.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의 개발 및 보급
 - 4. 마약류 중독자 재활 및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④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하여 운영과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51조의7(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형법」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8. 16.]

- 제51조의7(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분석하기 위한 조사 (이하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조신설 2024. 2. 6.]

[종전 제51조의7은 제51조의8로 이동 <2024. 2. 6.>]

[시행일: 2025. 2. 7.] 제51조의7

제51조의8(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형법」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51조의7에서 이동 <2024. 2. 6.>]

[시행일: 2025. 2. 7.] 제51조의8

제7장 보칙 <신설 2023. 8. 16.>

제52조(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류 관계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며, 마약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6. 7.]

제52조의2(유해성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적정한 지정을 위하여 임시마약류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독성 등 유해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52조의3(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 원료물질의 안전관리,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국외 관계기관 등과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본조신설 2018. 12. 11.]

- 제53조(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된 마약 류는 시·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마약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 제53조의2(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 폐기 사업 실시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 · 도지 사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 · 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선정 기준·절차, 사업 수행 방법,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54조(보상금)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경우에는 보상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6. 10.>

[전문개정 2011. 6. 7.]

- **제5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으려는 자
 - 2.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 3. 이 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

[전문개정 2011. 6. 7.]

제5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6. 7.]

- 제56조의2(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관리, 조제・투약・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급에 관하여는 이를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57조(다른 법률의 적용)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약사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6. 7.]

- **제57조의2(적용의 일부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관하여는 제 11조, 제15조 및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 2. 「약사법」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수입된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하여 승인받은 경우

[본조신설 2019. 12. 3.]

제8장 벌칙 <개정 2011. 6. 7.>

-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 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 1. 제3조제2호・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 유한 자
-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58조의2(벌칙) ①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 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3. 3. 28.]

-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관리・수수하거나 그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또는 사용한 자
 -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
 -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 8. 삭제 < 2023. 3. 28.>
 -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 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 14. 제18조제1항・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2018. 3. 13.>
-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 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4.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 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4.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 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행일: 2025. 2. 7.] 제60조제1항제4호

-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 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 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 7.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 시마약류를 취급한 자
 -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 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 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10의2.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 10의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 10의4.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 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2018. 3. 13.>

[전문개정 2011. 6. 7.]

-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2023. 6. 13.>
 -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 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 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 7.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 시마약류를 취급한 자
 -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 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 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10의2.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 10의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 10의4.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 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2018. 3.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일: 2024. 6. 14.] 제61조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제3항, 제18조제2항제2호,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2. 제9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마약을 취급한 자
- 3. 제11조의6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 중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4.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5. 18.,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 1.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제3항, 제20조·제22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 4. 제9조제2항, 제20조 및 제22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5. 제9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대마를 취급한 자
- 6.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6조,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 제1항, 제34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7.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8.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8의2.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9.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폐기한 자
- 10. 제13조제1항,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제6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1.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12.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한 자 또는 이탈한 자를 은닉한 자
- 13. 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 피한 자

법제처 35 국가법령정보센터

- 14. 마약을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입, 검사, 수거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제47조에 따른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5.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16.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록작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 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제12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ㆍ제12호와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5, 18,,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2024, 2, 6,>
 - 1.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제3항, 제20조·제22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 4. 제9조제2항, 제20조 및 제22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5. 제9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대마를 취급한 자
 - 6.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6조,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 제1항, 제34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7.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8.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8의2.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9.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폐기한 자
 - 10. 제13조제1항,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제6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는 제외한다)
 - 11.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12.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한 자 또는 이탈한 자를 은닉한 자
 - 13. 제40조제7항에 따른 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 피한 자
 - 14. 마약을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입, 검사, 수거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제47조에 따른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5.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16.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록작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 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제12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제처 36 국가법령정보센터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ㆍ제12호와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시행일: 2025. 2. 7.] 제63조제1항제13호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5. 18., 2018. 3. 13., 2019. 12. 3., 2023. 6. 13.>

- 1.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2.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또는 제17조에 따른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4. 제36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한 자
- 6.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한 자
-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 8. 제13조제1항, 제16조, 제26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를 위반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9. 제13조제1항,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한 자
- 10. 제14조를 위반한 자
- 11.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를 저장한 자
- 12. 제26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12의2.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13.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고 한 자
- 14. 제36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16. 향정신성의약품, 예고임시마약류,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거나 검사·수거·압류 또는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7. 대마를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8.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 19.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 20.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전문개정 2011. 6. 7.]

제65조 삭제 <2002. 12. 26.>

제65조의2(벌칙)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 **제66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① 제58조 및 제59조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②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각 해당 조문의 벌금(징역에 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7.]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 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억원(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하되,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6. 7.]

-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5, 18,, 2018, 3, 13,, 2019, 12, 3,>
 - 1.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삭제 < 2015. 5. 18.>
 - 3.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행위 또는 동물 진료나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 4. 삭제 <2015. 5. 18.>
 - 5. 제12조제1항, 제35조제2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6.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자
 - 7.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9.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10.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6. 7.]

-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5. 18., 2018. 3. 13., 2019. 12. 3., 2023. 6. 13.>
 - 1.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제처 38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삭제 < 2015. 5. 18.>
- 3.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행위 또는 동물 진료나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 4. 삭제 < 2015. 5. 18.>
- 5. 제12조제1항, 제35조제2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6.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자

6의2.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7.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9.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10.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6. 7.]

[시행일: 2024. 6. 14.] 제69조

법제처 39 국가법령정보센터